

제 928 호
1992. 9. 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면 장 : 공 보 광 전 영 호
전 화 72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통합발전실
전 화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670 호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1992 호 : 서울특별시재무회제규칙중개정규칙 15
- 교육위원회훈령
제 64 호 :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규정중
개정규정 19

(이번호계속)

공 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065

◎ 고 시

제 363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운동장 지적승인19
제 36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20
제 365 호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실시계획인가31
제 36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21
제 367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학교) 지적승인22
제 368 호 :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적변경승인23
제 37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24
제 37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24
제 37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취소및시행허가25
제 37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26

◎ 공 고

제 38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에 따른서류공람공고26
제 389 호 : 특정열 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업체행정조치27
제 390 호 : K·S 표시허가취소공고28
제 392 호 : 남대문구역제 7-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28
제 39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공람공고29
제 39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에 따른서류공람공고29
제 396 호 : 제 2 조전기공사업영업정지30
제 398 호 : 82 년도서울시건축상응모작품모집공고 30

◎ 교육위원회 공고

제 39 호 : 교육공무원명예 퇴직수당지급신청공고 31
제 40 호 : 서울교육상추천공고 32

◎ 예 규

제 427 호 : 서울특별시 사유재산관리 및 처분업무시행규칙 33
제 428 호 :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 규정 중개정규정 35

◎ 정 정 공 고

제 391 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378 호 (82.8.27) 36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 9.1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 제 1670 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별 표>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공보관	1. 공연장 설치 허가등 가. 공연장설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 나. 공연장 증축허가 다. 공연장 준공검사 라. 공연장 양수신고 마. 공연장 폐장 감독 바. 공연장 지도감독 사. 공연장 경영자 대리인 신고	공연법제 7 조 공연법제 7 조 공연법제 7 조의 2 공연법제 7 조 공연법제 1 조 공연법제 11 조 제 18 조 공연법 시행령제 17 조	구청장
내무국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2. 행정서사업 가. 허가 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다. 사무소 이전, 휴폐업 재개업 신고 라. 허가증 교부	인원사무처리규정 제 2 조 행정서사법 제 5 조 제 8 조, 제 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 행정서사법 제 16 조 행정서사법 시행령 제 13 조	구청장

국 번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마. 행정서사회 지회의 보고 사합처리 바. 행정서사회 지회의 감독 3. 소개영업자영업정지 처분	행정서사법 시행령 제 21 조 행정서사법 시행령 제 22 조 소개영업법 제 6 조	구청장
재무국	1. 물품불응결정 (차량, 지하철, 수도사업, 병원사업 특별회계 소관물품 제외)	지방개정법 제 61 조의 6 제 1 항	"
보건 사회국	1. 숙박영업허가등 가. 숙박영업허가 및 설치 장소 변경허가 나. 숙박영업 조건부 허가 다. 숙박업 시설등급 결정 라. 숙박업소의 보고요구 및 검사 마. 숙박업 시설개수명령 바. 숙박영업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사. 숙박영업허가사합 변경허가 및 신고 아. 숙박업의 휴지, 재개 또는 폐지신고 2. 목욕장업 영업허가등 가. 목욕장 영업허가 및 설치장소 변경허가 나. 목욕장 영업조건부 허가 다. 목욕장 시설등급 결정 라. 목욕장업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마. 목욕장업허가사합 변경	숙박영업법 제 4 조 제 1 항 " 제 4 조의 2 " 제 3 조 제 2 항 " 제 7 조 제 1 항 " 제 7 조 제 2 항 숙박업법 제 8 조 숙박업법 시행령 제 2 조 숙박업법 시행령 제 4 조 공중목욕장법 제 4 조 제 2 항 공중목욕장법 제 4 조의 2 공중목욕장법 제 3 조 공중목욕장법 제 8 조 공중목욕장법 시행령 제 2 조	구청장 구청장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업기관
보 건 사 회 국	바. 목욕장업 허가의 휴지 제개 또는 폐지신고	공중목욕장법 시행령 제 4 조	
	3. 이·미용업소에 대한 지 도 감독		
	가. 이·미용사의 업무 정지 처분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 6 조제 2 항, 제 7 조제 2 항	구 립 장
	나. 개설신고 및 이전신고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 8 조제 1 항	
	다. 폐업 및 휴업신고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 8 조제 2 항	
	라. 업소의 등급사정	제 9 조제 2 항	구 립 장
	마. 업소의 검사 및 개수명령	제 12 조	
	바. 영업소의 폐쇄명령	제 14 조	
	사.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인정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령제 2 조, 제 3 조	
	아. 영업소 명칭등의 변경신고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규칙 제 19 조	
	4. 시설모지, 사실화장장 또는 사실납골당의 설치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2 항	구 립 장
5. 무연분묘개장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		
6. 시체운반업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17 조		
7.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전염병예방법 제 11 조제 12 조		
8.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전염병예방법 제 20 조	보 건 소 장	
9. 제 1 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전염병예방법 제 23 조		
10. 제 1 종전염병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	전염병예방법 제 37 조		
11. 제 1 종전염병의 예방조치	전염병예방법 제 39 조 제 43 조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 건 사회국	12. 제 1 종전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전염병예방법 제 42 조	
	13. 기생충예방을 위한 수거	기생충질환예방법 제 6 조	보건소장
	14. 보건소 지도감독	보건소설치에 관한 규정 제 3 조	구청장
	15.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	의료법 제 30 조	보건소장
	16. 의료기관 개설특혜에 의 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법 제 31 조	"
	17. 의약품 판매업 허가	약사법 제 35 조	"
	18. 마약법 제 7 조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마약취급자 면허	마약법 제 7 조	"
	19. 마약법 제 7 조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마약취급자 면허증재교부	마약법 제 7 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 6 조, 제 7 조	"
	20.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교부	마약법 제 13 조	"
	21. 사고마약 폐기허가	마약법 제 15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 조 제 3 항	"
	22. 마약취급자격 상실자 소 지 마약신고	마약법 제 16 조 제 1 항	"
	23. 마약 양도승인	마약법 제 16 조 제 3 항	"
	24. 마약취급자 단속	마약법 제 51 조	"
	25.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지정, 폐업등의 신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 8 조, 제 24 조	"
	26. 향정신성의약품 사고·보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 27 조	"
	27.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 개설신고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보 건 사회국	28. 사회복지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및 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 제 1 항	구 청 장
	29. 사회복지법인 임원인가 (단, 사업법외가 2 개소 이상인 법인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 11 조	•
	30. 사회복지법인의 임시 이 사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 동 시행규칙 제 5 조	•
	3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13 조	•
	32. 기증물품의 용도 증명 발 급	관세법 제 28 조의 6 제 1 항, 제 2 항 동법시행규칙 제 19 조 제 3 항	•
	33.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 11 조	•
	34.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 및 인가취소, 사업정지처분	아동복지법 제 20 조 아동복지법 제 26 조	•
	35. 의례식장등의 영업허가 및 취소등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9 조	•
	36.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 22 조 동법시행규칙 제 13 조, 제 14 조	•
	37. 사회복지시설 폐지 사업 정지 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14 조	•
	38. 사회복지시설 개선, 사업 정지, 허가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 23 조	•
	39. 사실보호시설에 있는 미 성년자인 교아의 후견인 지정	보호시설에 있는 교의 후 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 제 2 조 김신강대자 복지법	•
	40. 보장구 제조업 수리 허 가 및 허가취소	제 24 조, 제 25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산 업 경제국	1. 제량승명업 및 제량기 판 매업 등록	제량법 제 15 조	구 청 장
	2. 시장개설 허가등 가. 시장개설 허가 및 허가 취소	시장법 제 6 조 제 13 조	"
	나.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변 경 신고	" 제 6 조	"
	다. 시장개설자 지위 승계 및 양도 승인	" 제 9 조	"
	라. 상설시장의 휴업폐지 신고	" 제 10 조	"
	마. 시장법상 명령이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제 13 조, 제 18 조 제 13 조, 제 25 조, 제 26 조	"
	바. 표준모형 시장지도 육성 사. 보고징구 및 검사	시장법 제 16 조 " 제 19 조	"
	3. 기존공장의 등록	공업배치법 제 14 조	"
	4. 제 2 종 전기 공사업 면허 기재사항 변경신고	전기공사업법 제 12 조	"
	5. 제 2 종 전기공사업 보고 및 검사	" 제 33 조	"
	6. 전압 5 만 V 미만 전력 500 KW 미만 자가용 전기 공작물에 관한 다음 권한		"
	가. 공사계획인가	전기사업법 제 47 조 동 시행령 제 38 조	"
	나. 공사계획신고	전기사업법 제 48 조 동 시행령 제 38 조	"
	7. 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수리 개조 이전 사용의 일시정 지 또는 사용의 제한명령	전기사업법 제 44 조 동 시행령 제 38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산 업 경 제 국	8. 고압가스용기, 기기제조수리 업 허가 및 지도감독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제 4 조	구 청 장
	9. 고압가스용기, 기기, 기구 및 특정설비수입 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21 조	·
	10. 가축전염병 방지		
	가. 가축에 대한 소독 및 청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6 조	·
	나. 감염가축의 격리이동 제한	· 제 8 조	·
	다. 감염가축의 도살 처분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0 조	·
	11. 동물병원 개설등록	수의사법 제 17 조 제 3 항	·
	12. 공, 수의사의 임면	수의사법 제 21 조	·
	13. 종 개업등록	축산법 제 13 조 제 1 항	·
	14.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축산법 제 16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21 조 제 2 항	·
	15. 동물용 의료용구 및 위생 용품 판매업 등록	동물약품등 취급규칙 제 8 조	·
	16. 동물약품 판매업 허가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 제 10 조	·
	17. 동물약품 취급신고	동물약품등 취급규칙 제 14 조	·
	18. 농약판매업등록	농약관리법 제 10 조	·
	19. 가축 자가사육 증명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 조	·
	20.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사료관리법 제 9 조 제 2 항	·
	21. 종묘상 등록	종묘관리법 제 3 조	·
	22. 비료판매업 등록 및 신고	비료관리법 제 13 조	·
	23. 방제비용 부담명령서 교부	식품방역법 제 23 조의 3 및 식품방역법 제 23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비용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명	수입기관
산 업		부담에 관한 규정 제 1 조	구 청 장
경제국	24. 일반방제업 등록	농약관리법 제 11 조 1항	"
	25. 농지제량제 경비부과 인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63 조 의 3	"
	26. 수산제조업의 신고	수산업법 제 45 조	"
	27. 어업허가 및 신고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 8 조 및 제 9 조	"
	28. 양곡매매업 중 도매업 및 소매업		
	가. 영업허가	양곡관리법 제 15 조의 3 제 1 항	"
	나. 영업시설의 양도 임대 변경승인	양곡관리법 제 15 조의 3 제 41 항	"
	다. 영업폐지 신고	양곡관리법 제 15 조의 1 제 41 항	"
	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양곡관리법 제 22 조	"
	29. 공업배치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변경등의 권고	공업배치법 제 8 조	
	30. 공업배치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등	" 제 9 조	
	31. 공업배치법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허가	" 제 13 조제 2 항	
	32. 공업배치법 제 32 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 제 32 조	
	33. 공업배치법 제 3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 제 34 조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도 시 제 회 국	1.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2. 환지확정 및 예정지 지정 증명 3.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지장물 이전제거 및 보상 4. 사도 개설 허가 5.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항 제 1호중 가, 나, 라, 마, 사, 자 및 차목과 규칙제 2조 제 1항 제 2호 나목 및 동조 제 1항 제 4호 바, 아 및 차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나. 규칙 제 2조 제 1항 제 1호 아목 및 동항 제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증축 다. 규칙 제 2조 제 1항 제 6호중 가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라. 규칙 제 3조 제 2호중 잡목 솎아내기, 가지치기 및 지장목, 지압목, 피해국등의 제거와 육종 연구시험을 위한 국가의관의 벌채 및 간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조 .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 40조, 제 41조 사도법 제 4조 . . 도시계획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내지 제 4조 . 도시계획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 제 21조, 동법시행규칙 제 2조 내지 제 4조 . . .	구 청 장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도 시 제 회 국	마. 기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사항 이외의 공익사업(부락 공동사업포함)의 시행 바. 규칙 제 2조 제 1항 제 3호 가목중 농임용 양수장(17제곱미터이하) 의 건축 및 증축 사. 규칙 제 2조, 제 1항 제 3호 가목중 영내의 국 방 군사시설의 설치 아. 규칙의 제 2조 제 1항 제 3호 가목중 국도, 고 속국도, 지방도의 신설확 장 및 보수 6.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의 토지관리	도시계획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내지 제 4조 " " " " " " " " " "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9조	구 청 장 "
건 설 관 리 국	1. 다음에 계기하는 건축법상 의 권한(연면적 3,000평을 넘는 건축물, 11층 이상 인 건축물, 특정가구 정비 지구내의 건축물 제외) 가. 건축법 제 2조 제 15호 나목, 제 5조, 제 6조 제 3항 제 7조, 제 7조의 2 제 7조의 3 제 2항, 제 8 조, 제 9조의 2 제 3항, 제 42조의제 1항제 1호, 제 4호 및 동조제 4항, 제 43조 제 47조 제 2항	건축법 제 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5조	" " " "

구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건 설 관 리 국	2. 주택개량 제개발지구내 건축 물의신축, 개축, 증축 허가	도시계획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구 형 장
	3. 주택개량 제개발지구내 토지 형질 변경허가	도시계획법 제 4 조	·
	4.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공동주택관리령 제 10 조	·
	5. 자치관리 기구인가 및 자치 관리 폐지신고	· · 제 12 조 내 지 14 조	·
	6. 주택관리인 업무신고	공동주택관리령 제 22 조	·
	환 경 녹 지 국	1. 쓰레기 .종말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준공신고	오물청소법 제 9 조 제 2 항
2. 액상폐기물 정화조 설치신고		오물청소법 제 12 조 동 법 시행규칙 제 15 조	·
3. 액상폐기물 정화조 검사필증 교부		오물청소법 제 2 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 조	·
4. 환경보전에 관한 보고 및 검사등		환경보전법 제 24 조	·
5. 폐기물 운반신고		환경보전법 제 51 조 2 항	·
6. 폐기물 종말처리 신고		· 제 52 조	·
7. 영림계획의 작성 지정인가		산림법 제 8 조	·
8. 시업신고		· 제 11 조	·
9. 시업 명령		· 제 12 조	·
10. 영림계획의 변경명령 및 인 가취소		· 제 13 조	·
11. 시업의 정지 또는 대집행동		산림법 제 14 조	·
12. 시업 대집행확인서 및 산림 소유지 비용 불변상 확인서 발행		· 제 15 조 세 3 항 제 2 호, 제 3 호	·
13. 일반개발지역의 개발명령, 대 집행, 대집행자의 교체, 시정 개발 대집행 확인증서 발행		산림법 제 26 조, 제 27 조 제 29 조, 제 31 조, 제 32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 누지국	14. 경영의 환원에 대한 재결	산림법 제 33 조 제 4 항	구청장
	15. 조림의 대행	" 제 41 조 제 3 항	"
	16. 입목벌채, 산림훼손, 입산물의 굴취, 채취등 허가와 신고복구 명령	" 제 90 조	"
	17. 입산 통제구역의 시정해제 및 입산허가등	산림법 제 97 조 내지 99 조	"
	18. 산화방지를 위한 허가산화 예방, 산화경방활동 진화물 위한 조치	산림법 제 100 조 내지 102 조	"
19. 보전임지의 조사확정	산림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	
상하수국	1. 하수도 시설공사 (2 개구 이상 연결된 간선하수도 제외)	하수도법 제 8 조	"
	2.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도법 제 8 조	"
	3. 공공하수도 사용공고 및 적용허가	하수도법 제 9 조, 20 조	"
	4. 검용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	하수도법 제 10 조	"
	5. 비관리청 시행공공하수도 공사허가	" 제 13 조	"
	6.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제 24 조	"
	7.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및 보 관	" 제 19 조	"
교통국	1. 노의주차장 설치허가 및 신고	주차장법 제 12 조	"
	2. 자동차등록표 교부대행허가	도로운송차량법 제 23 조	차량관리 사업소
	3. 정비관리자의 해임명령	도로운송차량법 제 43 조 의 6	"
	4. 차명연장 허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령 제 4 조	"
	5.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차장법 제 7 조, 8 조	구청장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민 방 위 국	1.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	민방위 기본법 제 22 조 제 28 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 39 조 제 3 항	구 형 정
소 방 본 부	1.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위험물 제조소등의 화재에 방규정 인가 3. 소방대상물 개수명령 4. 소방설비업 등록 5. 소방용 기계, 기구 판매 신고 6. 방염처리업자 지정	소방법 제 15 조 소방법 제 20 조 소방법 제 7 조 소방법 제 30 조 제 1 항 소방법 제 35 조 소방법시행규칙 제 26 조	소 방 서 장

규 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9.6

서울특별시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규칙제 1992 호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8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 1) 본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적재산은 그 주관과장
 - 2)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적재산은 구청장(동계산 포함)
 - 3)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적재산은 사업소장
다만, 종합건설본부는 총무부장
 - 4) 시관할 구역외의 공적재산은 시장이 위촉하거나 지정한다
 - 5) 구관할 구역외의 공적재산 중 잡종재산은 구청장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유재산의 일부를 총괄자가 관리처분할 수 있다.
- (3)제 2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에 규정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그 관리구역내에 있는 모든 사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재산현황 조사결과 재산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괄자에게 재분류 요청한다.
- 2) 무단점용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점(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법제 57 조, 법제 57 조의 2, 법제 57 조의 4, 법제 57 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 118 조의 2의 제 1 항과 제 2 항을, 제 2 항과 제 3 항으로 하고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 6 항과 제 7 항을 폐지한다.

①총괄자는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제 120 조에 제 3 항 내지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자는 소관 재산을 당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소관재산의 등기부 및 지적 공부상의 기재사항을 재산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정리 하여야 한다.

⑤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관리자는 사유재산의 보호 및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들 수 있다.

제 122 조 단서중 “감수인”을 “관리인”으로 한다.

제 123 조를 삭제한다.

제 124 조중 “시장” 다음에 “(참조: 관재과장)”를 삽입하고 제 4 호를 제 6 호로 하며 제 4 호 및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시계획확인원

⑤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제 126 조의 2 제 1 항중 “갖춘 기부서에 사용 계획서를”을 “갖추어 사전에 동재산을 관리할 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로 하고 “시장” 다음에 “(참조: 관재과장)”을 삽입하며 제 5 호 “가격 및 현황을 “재산의 현황”으로 제 6 호 “건축대지증명”을 “도시계획확인원”으로 하고, 제 7 호를 제 8 호로 하며, 제 7 호에는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으로 하고, 제 8 호는 삭제하며, 제 9 호에는 “사용계획”을 신설한다.

그리고 동조 제 2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27 조중 “밟아등기 권리증을 첨부하여”를 “취한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로 하고 제 1 호 내지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산의 표시 (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재산취득근거
4.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5. 도시계획확인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8 조중 “다음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를 “방침을 받아 이를 취득한다.”로 하고 제 1호 내지 제 7호를 삭제한다.

제 128 조의 2 제 2항은 삭제한다.

제 129 조중 관리자는 다음에 “등기 정리후”를 삽입하고 “총괄자”를 “시장(참조:관제과장)”으로 하며 제 1호 내지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건의 표시 (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4. 도시계획확인원

제 132 조중 “방침을 득한후 “ 다음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다음 사항을 갖추어 방침을 받은후 교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 1호 내지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환쌍방 재산의 표시 (도면상부)
2. 교환쌍방 재산의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3. 교환쌍방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4. 교환쌍방 재산의 등기부 등본
5. 인감증명서
6. 교환승락서

제 134 조의 2 제 1호 단서중 “6분으로 한다”를 “6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제 2호중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5분으로”를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기준승환율에 당액에서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2할로” 한다.

제 134 조의 3중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호는 삭제한다.

②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구분별 공과금의 합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단층건물

1층은 부지평가액의 전부

지하철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2층 건물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 이상 건물

1·2층은 부지평가액의 각각 2분의 1

3층 이상 및 지하실은 부지평
 가액의 각각 3분의1
 제 135조 표제중“(대부신청)”을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제 1항 및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리자는 소관재산물 사용허가 또
 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사
 항을 갖추어 법제 57조 및 제 57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불건의 표시
2. 인근지대부실례조서 (또는 무상
 으로 하는 사유)
3. 차수인의 주소, 성명
4. 차수목적
5.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
6. 도 면
7. 기타 필요한 증명 (토지, 가옥
 대장, 도시계획확인원)

②시유재산물 사용허가 또는 대부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제 1항의 사항을 익월 10
 일까지 시장 (참조: 관제과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6조의 2 제 1항 내지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항은 제 5항
 으로 한다.

제 136조의 2 (매각재산대금납부) ①잡
 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

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매각재산대금이 10억원 이상
 일 때에는 6개월까지, 50억원 이
 상일 때에는 1년까지 은행일반대
 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분
 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은행일반대출 이자율에 의한 이
 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은행일반대
 출 이자율이 영제 69조에서 정한
 이자율의 하한율을 미달할 경우에
 는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
 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한다.

④제 1항과 제 2항의 대금을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납하
 였을 때에는 해약조치 할 수 있다.

제 136조의 3 중 “공유”를 “시유”
 로 하고 “제 1조제 1항의”다음에
 “최고”를 삽입하며 “준용한다.”
 를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 138조 제 1항중 “비치하고 도면
 을 부속시켜”를 “비치하여”로 하
 고 제 2항중 “지호의” 다음에 “재
 산”을 “대장”으로 한다.

제 139조 제 1항중 “및 도면을 정
 비하고 증감변동 등기를”을 “정
 비”로 한다.

제 140 조 중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참조: 제무국장) "을 "의하여 시장 (참조: 관제과장) "으로 한다.
 제 141 조 중 "하고 이에 도면을 부속시켜야"를 "하여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당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에 있는 대금에 대한, 적용이자율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 기간은 종전규정에 의하고 이후기간은 제 136 조의 2 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매점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1982. 9. 10.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구 본 석 인

◎ 훈령제 64 호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매점운영규정중개정규정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매점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 조 제 2 항 중 "기말수당"을 "기말수당, 현금출납수당, 물품출납수당"으로 한다.

제 19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금매점의 현금출납 및 물품출납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은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현금출납수당 및 물품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 9. 1 일부터 적용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63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운동장
 지 적 승 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96 (82.5.14) 서고시 서 313 호 (82.8.12) 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2.12.3) 관한 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 바,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운동장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평)	비고
신설	학교	망우동 126-7 일대	16,397 (4,960)	
·	학교(송곡여중고)	망우동 252-1 일대	14,169	기존학교
·	학교(영란여중고)	망우동 220 일대	35,452	"
변경	운동장	망우동 123 일대	8,846	폐지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구분	등급	특별	폭원	연장기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소로	3	6	397	동대문구망우동 251	동대문구망우동 244-25	
변경	"	3	6	397	"	"	폐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6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33 호('82.4.20) 및 동고시 제 169 호('81.5.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 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81.12.31)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서구신정동산 109-1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명칭 : 명신여자상업전수학교
3. 사업의규모 : 건축면적(지하1층, 지상 3층 2,193.99 ㎡)
4.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주소 : 강서구신정동산 109-1

성명 : 학교법인명신학원

5. 사업시행기간 : 1982.9 ~ 1983.

6. 허가도서 : 별첨도면 (도면생략) 끝.

◎ 서울특별시고시제 365 호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실시
계 획 인 가

1. 서울특별시 관내 은평구 불광동 280 의 17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은평구불광동 280 의 17 일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3) 사업시행면적 : 20,038 ㎡

4)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국립환경연구소장

5) 사업시행기간 : 82.9.6 ~ 12.31

6) 위치도 및 계획병면도 : 별첨 (별첨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소유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8) 사용 또는 수공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 서울특별시고시제 36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13 호 (82.3.18) 및 제 160 호 (82.4.22)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시공을 인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공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 호 (81.12.31)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신정동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6.

서울특별시관

1. 사업시행지 :

강서구화곡동산 62-4 의 13 필지

2. 사업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화서국민학교

<p>3. 규모및면적 : 총대지면적 : 9,388 2,844 평 건축면적 : 968.4 건축연면적 : 3,560.4 (4 층건물)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p>	<p>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간 6. 위치 및 계획병면도 : 별첨 (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8. 토지조서 : 별첨 (도면생략)</p>
--	--

수 용 토 지 조 서

학 교 명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화서국민학교	강서, 화곡동	산 62-4	임	6,913	
		61-3	"	285	
		18-5	대	227	
		18-7	도 로	72	
		18-9	대	724	
		19-3	"	348	
		19-4	"	496	
		19-7	답	10	
		20-4	"	4	
		983-11	대	159.3	
		983-12	"	27.4	
		983-15	도 로	32.1	
		983-16	대	74.1	
		무번지	도 로	16	
				9,387.9	2,844 평

<p>◎ 서울특별시고시제 367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 학교)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398 호 (79.11.7) 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p>	<p>228호 (82.6.22) 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고시된 아파트지구내 도 시계획시설 (공원 , 학교) 에 관하여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제 12조 2항 및 도시계 획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p>
--	--

(‘81.12.31)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9.8
 서울특별시장

○ ○ 도시계획시설 (공원, 학교) 지적승인 조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근린공원	강동구암사명일아파트 지구내	25,000 ㎡	명일 적 3 공원
학 교		10,910 ㎡	국민학교부지

※ 별첨도면표지와 갑본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68 호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적변경승인고시

1. 건설부고시 제 155 호 (‘82.4.26) 로 주택개발 재개발구역 변경된 봉천 제 2 구역의 6 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지적변경 승인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 및 관악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9.8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변경승인 고시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봉천제 2 구역	봉천동산 94, 산 98, 38 번지일대	94,380	75,080	△ 19,300
“ 제 3 “	“ 101, 470 “	180,250	137,525	△ 42,725
“ 제 4 “	“ 101, 102, 480 “	334,731	243,010	△ 91,721
“ 제 6 “	“ 23, 22 “	15,800	14,275	△ 1,525
“ 제 7 “	“ 89, 81 “	176,930	97,708	△ 79,222
신림제 2 “	신림동 328 “	98,200	37,199	△ 61,001
“ 제 3 “	“ 산 152, 402 “	60,470	45,444	△ 15,026

나. 도면 및 조서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7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 1. 건설부고시 제 186 ('62.12.20)호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 375 호 ('82.8.26)로 공람공고 필하고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
- 3.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2.9.9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장의 위치: 중구 을지로1가 192-30 ~ 을지로 1가 192-34
- 나. 사업의 종류와 명칭: 중구 을지로 1가 192-30 번지 ~ 을지로 1가 192-34 번지간 반도조선아케이드

진입로 정비공사

- 다. 사업의 규모: 폭 6 미터, 연장 46 미터
- 라.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중구청장)
- 마. 착공 및 준공예정일: 일가일 - 1982.12.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별첨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설명: 별첨

◎서울특별시고시제 37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5 호 ('81.9.1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1.12.31)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9.10

서울특별시장

다 음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조서									
구분	종별	등급	유별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종 로	2	1	8 m	106 m	성산동120-9	성산동127-1	위치변경 및측량확장
제	지	"	"	"	"	"	"	"	
신	설	"	2	2	12 m	91 m	성산동115-6	성산동127-2	

<p>나. 도면 : 별첨 (생략)</p> <p>◎서울특별시고시제 372 호</p> <p>도시계획사업 (학교) 취소및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6 호 ('81.6.13)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사항을 취소하고</p> <p>2.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82.2.3) 및 동고시 제 271 호 ('82.7.21) 로 확장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학교) 확장시행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일</p>	<p>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9 1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청</p> <p>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685과 60호지</p> <p>나. 사업취소지 관악구봉천동 681-19외 19필지</p> <p>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칭 : 당곡중학교, 봉천고등학교</p> <p>라. 사업의 규모 및 변경</p> <p>1) 취소 - 20,115.7 ㎡ (6,085 평)</p> <p>2) 확장 - 36,873 ㎡ (11,154 평)</p> <p>3) 건물 : 2 동</p> <p>마.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p> <p>바. 사업의 착수 : 시행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p> <p style="text-align: right;">준공 : 착수일로부터 2 년 이내</p>
--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적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 별첨

아. 토지의 소유자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자. 시행허가 실제도서 : 별첨

◎서울특별시고시제 37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5 호 ('82.4.16) 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시설(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25 조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2.12.31)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2.9.1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처 : 관악구신림동 168-5외 10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신본국민학교

다. 사업의 규모 : 14,497㎡(4,390명)

건축면적 : 1,125㎡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마.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일

착수 - 시행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준공 - 준공일로부터 2 년 이내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의 소유자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시행허가 실제도서 : 별첨 (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8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에 따른서류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4 호 ('82.5.12)호로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학교(한빛맹아원)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청취를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등급시행령 제 27조의 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하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2. 9. 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도봉구수유동 484-21 산 162-10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한빛맹아원직업보도실건립
(지층 - 2층)

다. 사업의규모 및 명칭

- 1) 대지면적: 3 144㎡
- 2) 건물면적

건축면적 기존 858㎡ 증축 198㎡
연면적 기존 1,347㎡ 증축 480㎡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도봉구수유동 484-21
사회복지법인한빛원이사장 김봉송
마. 사업시행기간
82.9.30 - 83.9.30 (예정)

◎서울특별시공고제 389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체명정조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업체에 대하여 명정조치하였음을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2. 9. 4

서울특별시장

지정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제 지	사 유	조 치	관 령 부
구로 85	삼경엔지니어링	백 현 기	구로동 416-10	무단 폐업	지정 취소	제 30 조 제 1 항
구로 35	우진설비	박 병 옥	시흥 472-29	기준 미달	영업정지 2 개 월 (82.9.5- 11.4)	.

<p>◎ 서울특별시공고제 390 호</p> <p style="text-align: center;">K.S 표시허가취소공고</p> <p>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허가 취소 처</p>	<p>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9. 7</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허가번호및 허가일자	1285(76.3.23), 1314(76.5.26) 1544(76.5.26), 1594(78.2.24), 1313(76.5.26)
제조업체	우성콘크리트공업(주)
소재지	서울도봉구상계동 1141
대표자	김 병 석
품 명 및 규격번호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F 4403), 보도용 콘크리트판 (KSF 4001), 콘크리트 경계블럭 (KSF 4006) 철근콘크리트 케블 트로프 (KSF 4011), 철근콘크리트 근가 (KSF 4023)
처분사유	공업표준화법 위반
처분내용	K.S 표시허가 취소

<p>◎ 서울특별시공고제 39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대문구역제 7-1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p> <p>1. 건설부고시 제 425 호 (78.12.29) 로 구역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326 호 (82.8.16) 로 사업계획변경 결정 된 남대문구역 제 7-1 지구에 대하여 동지 구내 토지소유자인 삼부토건주식회 사 (대표이사 조창구) 로부터 도시 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재 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있어</p>	<p>동법 제 15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9. 9</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랫 개 요</p> <p>가. 사업명칭 : 남대문구역제 7-1 지구 재개발사업</p> <p>나. 시행위치 : 중구남창동 9-1 번지</p> <p>다. 시행면적 : 2,133.7㎡ (645.4 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790.2㎡ (541.5 평) ○ 공공용지면적 : 343.5㎡ (103.9 평)
--	---

라. 건축계획 (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한다)

- 건축면적 : 약 714㎡ (전피율40%)
- 연면적 : 약 13,886㎡ (용적율570%)
- 주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층 수 : 지상 15층, 지하 3층

마. 시행예정자

중구회현동 1가 181-1

삼부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창구)

바. 규약및사업계획서 : 별첨 (생략)

사.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아. 공람기간 : 1982.9.9 - 1982.10.8

자.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재개발과 (720-4627)

중구회현동 1가 181-1

삼부토건주식회사 (777-6467)

◎서울특별시공고제 39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8 호 (68.1.23)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인가된 김포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을 위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등촌동 525 번지 학교법인 봉명학원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1982. 9.10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위치 : 강서구등촌동 525번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영일고등학교
3. 규모 :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5.5㎡
4. 사업시행허가신청자 : 학교법인 봉명학원
5.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간

◎서울특별시공고제 39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에
따른서류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 193 호 (74.12.14) 와 서울시고시 제 215 (76.12.14) 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우이동103-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학교) 사업시행을 위한 서류의 공람 및 국민 의견청취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에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에 공람하며 본 사업시행에 다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제출하기 바람.

1982. 9.10

서울특별시장

<p>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우이동 103-1 산 50-9 105-7</p> <p>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칭 : 신경여자중·고교 기념관 건립 (지층 - 4 층)</p> <p>다. 사업의규모 및 명칭</p> <p>1) 대지면적 : 35,974.5㎡</p> <p>2) 건물면적 건축면적 기존 8,364㎡ 증축 565㎡ (170평) 연 면 적 기존 32,678㎡ 증축 2,425㎡ (733평)</p> <p>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도봉구우이동 103-1 학교법인선덕학원이사장 박준권</p>	<p>마. 사업시행기간 : 82.10.10 - 83.9.30 예정</p> <p>◎ 서울특별시공고제 396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조 전기공사영업정지</p> <p>전기공사업 제 29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업을 행정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9.1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다 음

면허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영업정지기간
21	한승전기(주)	박종역 윤해룡	마포구염리동 151-44	82.9.13-82.10.12 까지

<p>◎ 서울특별시공고제 398 호</p> <p>'82년도서울시건축상용모작품모집공고</p> <p>서울시내의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포상하므로서 도시미관조성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져 아래와 같이 '82년도 서울시 건축상을 시상할 계획으로 응모작품을 모집 공고하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9.13</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1. 상의 명칭 ○ '82년도 서울시건축상</p> <p>2. 상 및 부상 ○ 금상 1명 (부상 1,000,000 원) ○ 은상 2명 (부상 각 500,000 원) ○ 동상 3명 (부상 각 300,000 원)</p>
---	--

3. 응모대상

- '82년도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건축물중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대한건축학회의 추천작품
- 추천은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건축사가 제작한 작품에 한함. (심사위원은 응모대상에서 제외)

4.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82.10.1 - 10.31
- 장 소 : 서울시 건설관리국 건축지도과 (725-6367)

5. 작품심사기간 및 심사위원

- 기 간 : 82.11.10-11.20
-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별도선정

6. 제출작품 및 요령

- 제출작품
 - 완공사진 또는 투시도 (모형 제출은 입의)
 - 배치도
 - 평면, 입면, 주단면도
 - 건물명, 건물개요 (위치, 규모, 주위현황, 기능도 등) 및 필요한 사항
- 제출요령
 - 작품규격은 판넬 (90cmX90cm) 2 - 5개
 - 작품제출시 제출자명 표기는 작품과 분리 표기

7. 기 타

-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포하지 않음.
- 제출작품은 전시 기간이후 반환함 (단, 당선작은 제외)

◎ 서울시교육위원회공고제 39 호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신청공고

교육공무원법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82.11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2. 9.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 감

1. 수당지급 대상자

공립 초, 중등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의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

가. 년 령

- 1) 60세이상
- 2) 신체 정신상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경우 55세이상

나. 경력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경력 합산)

- 1) 30년이상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년이상

가) 제직중 훈장을 받은자

나) 재직중 각급기관장의 표창
을 받은자

다) 재직중 시, 도 단위가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자

2. 수당지급일 : '82.11.30 (화)

3. 신청기간 : '82.10.11-10.16(6일간)

4. 신청절차

소정의 신청서 건강진단서등 판
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소속기관
장 및 감독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에게 제출한다.

5. 수당지급액

기준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에 지급배수를 곱한금액

6. 지급절차

가. 대상자의 결정통지 : 대상자가 근
무하는 고등학교장 또는 소속교
육구청장에게 통지한다.

나. 수당지급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7.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
청장 또는 당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교육위원회공고제 40 호

서울 교육 상 추천 공고

서울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분에게 제 4 회 (1982 년도)

서울교육상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
이 수상후보자추천을 공고한다.

1982. 9.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

1. 시상부문 및 인원

가. 초등교육부문 : 2 명

나. 중등교육부문 : 2 명

다. 사회교육부문 : 1 명

2. 시상내용 : 상장 및 메달, 부상 -
상금 1 인당 200 만원

3. 추천대상

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사업이나
교육발전에 지대한 업적이 있는자
나. 문교정책 또는 교육위원회 교
육시책에 부응하여 수도교육발전
에 헌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탁
월한 공적을 쌓은자

4. 추천기관 : 각급교육기관장, 공공기
관장, 등록된 사회단체의 장

5. 구비서류

가. 공적조서 10 부

나. 공적요약서 10 부

다. 명함판사진 (4cm X 6cm) 1 매

라. 이력서 1 매

마. 공적증빙자료 1 부

(자료에 따라 저서, 청사진,
투시도등도 가함)

바. 신원증명서 (일반인에 한함) 1 부

- 6. 접수기간 : 1982.10.4-1982.10.20
- 7. 접수처 : 해당 각과
 - 가. 초등교육분야 : 당위원회초등교육과
 - 나. 중등교육분야 : ' 중등교육과
 - 다. 사회교육분야 : ' 사회교육과
- 8. 시상 : 1982.12.20 (월) 일경 예정
- 9. 기 타
 - 가. 공적조서, 공적요약서의 서식은 당위원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사회교육과와 각교육구청 학무과에서 배부함.
 - 나.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위원회 초등교육과(722-1909)나, 각교육구청 학무과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규

서울특별시 사유재산관리 및 처분 업무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2. 9. 6.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 서울특별시에규제 427호

서울특별시사유재산관리및
처분업무시행세칙

제 2 조 중 "비치하고" 다음에 "도면

을 첨부하여"를 삭제한다.

제 3 조, 제 5 조, 제 14 조의 "(참조: 제무국장)"은 "(참조: 권역과장)"으로 한다.

제 4 조 제 2 항 중 "구청장"을 "관리자"로 하고 "지적정리나 가옥대장을 정리하고"를 삭제하며 "지체없이" 다음에 "시장(참조: 제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토지대장,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 관제공부와 재산대장을 정리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 4 항을 삭제한다.

제 6 조 제 1 항 "규칙제 118 조 제 3 항 4 호"를 "규칙제 120 조 제 6 항"으로 하고 "임대"를 "재산"으로 하며 "여하한" 앞에 "관리인"을 삽입한다.

제 8 조 제 3 항 제 2 호 중 "다" 다음에 "이"를 삭제한다.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를 제 5 호로 하고 제 1 호 내지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부서사본 또는 양여증서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2. 등기부 등본
3. 도시계획 확인서
4. 사용계획서

제 10 조 제 2 항 중 "사업주관국장이 된다"를 "영해 재산관리자가 한다"로 한다.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조 (취득재산의 정리 및 관리자 지정 요청)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재산취득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목 기타 권리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용도에 따라 등기부, 지적공부등 관계공부의 기재사항을 정리한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에게 관리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재산의 표시 (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 2. 토지 (가옥) 대장
- 3. 취득목적
- 4. 도시계획확인원
- 5. 기타 필요한 자료

제 12 조 제 1 항 제 5 호의 "건축대지증명서"를 "도시계획확인원"으로 한다.

제 14 조 제 4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를 제 2 호 내지 제 7 호로 하고 제 1 호와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용재산의 표시
- 8. 취소권의 유보

제 15 조 제 2 항중 "영제 67 조 및 영제 67 조의 2"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영제 63 조 및 영제 67 조"로 한다.

제 16 조 제 1 항중 "수입원" 다음에

"의대종"을 삭제한다.

제 17 조 제목 "(대부조건)"을 "(손해보험가입)"으로 하고 제 1 항중 "잡종재산등"을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로 하며 제 1 항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조의 "화재보험"을 "손해보험"으로 하고 "대부" 다음에 "또는 사용허가"를 삽입하며, "할것"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 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건가액의 손해보험을 시장을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 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2 조중 제 1 항 제 1 호와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중 "100평"을 "200평"으로 하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건물로 점유된 200평 미만의 재산
- 3. 폭이 7.6미터 미만의 좁고, 긴 띠모양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할 재산

③시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는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 23 조 제 3 항중 제 56 조 다음에 "제 3 항"을 "제 2 항"으로 한다.

제 24 조 제 1 항중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를 "사함을 갖추어"로 하고 제 3호의 "건축대지증명"를 도시계획확인원"으로 한다.

제 26 조 제 1 항중 "규칙 제 136 조의 2 앞에 "경제 69 조 및"을 삽입하고 "전액" 다음에 "을"을 삭제하며 "3년"을 "5년"으로 "년 2할의"를 "규칙 제 136 조의 2에 규정한"으로 하고 "최종회 불입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충당하고 그 잔액으로 한다."를 "계약보증금은 최종회불입금 납부시 대체충당한다"로 한다.

동조 제 2 항중 "매각대금"앞에 "잔"항의"를 삭제하고 "2 할 7 분"을 "2 할"로 한다.

제 2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9 조 (매각재산의 사용승인)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대금완납전이라도 그 토지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 1)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기간내 성실하게 납부한때
-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 31 조 제 1 항중 "소유권이전시" 삭제하고 "증명된 토지대금은 청산시의 부동산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된 토지대금은 계약시 가액에 연 5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다"

를 "증감평된 토지대금은 계약시 가액으로 정산한다"로 하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증명된 토지대금은 증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 2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 가산징수 한다

부 칙

제 4 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당시와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을 연체한 분에 대한 적용연체 이자율은, 이 예규 시행일 이전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후 기간은 제 26 조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에규제 428 호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중 개정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2 9. 10.

서울특별시장

제 14조 제 2항 제 1호중 "납부일
까지 년 27%"를 납부일까지년20
%로 한다.

제 14조 제 3항 제 1호 및 제 2호중
"년 2할 7분"을 년 2할로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82. 9.10부터 시
행한다.
- 2.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
완료 또는 매각한 체비지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 정 공 고 인

◎서울특별시공고제 39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 378호(82.8.27)
로 도시계획사업 (주차광장, 녹지 및
도로개설) 시행에 따른 공람 공
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
고함.

1982. 9. 7.

서울특별시장

- 1. 도시계획사업 (주차광장, 녹지 및
도로개설)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를 도시계획사업 (광장, 도로) 시행

에 따른 공람공고로

- 2. 건설부 고시 제 431(63.7.1) 호
및 제 39호 (78.4.13)호로 도시계
획사업시설 (주차광장, 녹지 및 도
로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종로
구 훈정동 100번지일대 (종묘앞)
주차광장, 녹지 및 도로개설에 대
해볼

건설부고시 제 177 (62.12. 8) 호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건설부고시 제 431 (63. 7. 1) 호
로 지적고시된 광장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9호 (78. 2.
10)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와

서울특별시고시 제 153호 (78. 4.
13)에 의거 도로로 지적고시된

종로구 훈정동 100번지 일대 (종
묘앞) 광장 및 도로에 대해로

- 3. 사업계획서중 나항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주차광장,
녹지 및 도로개설) 종묘앞 주차광장
및 녹지도로 개설공사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
업 (광장, 도로) 종묘앞 광장 및 도
로공사로 정정.

- 4.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건물의 소재지지
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
첨 (생략)을 별첨 기재로 정정함.

사 령

◎ 1982년 9월 8일자 경제 472 호

공무원교육원 류 윤 근
행정서기보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사무처 파견
근무를 명함. (82.9. 8-83.9.7)

1982년 9월 10일자 경제 473 호

강남구시민봉사실 황 의 홍
지방행정주사보

행정주사보에 명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강남구공원녹지과 김 한 수
지방농림기원보

농림기원보에 임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강남구서초2동 신 병 증
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강남구일원동 김 주 한
농림기원보

지방농림기원보에 임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 1982년 9월 10자

경제 47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윤장희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김태홍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파견근무를 해제함. 시립운동장 근무를 명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파견근무를 해제함.	건설과제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엽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파견근무를 해제함.	구로구재무과	지방행정서기
여덕수	동작구 근무를 명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파견근무를 해제함. 총합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구로구가리봉1동	.

◎ 1982년 9월 8일자

명제 475 호

중 구 제 무 과 이 동 우
지방행정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월에 처함.

등대문구 근무를 명함.

◎ 1982년 9월 10일자

명제 476 호

현 부 서	직 급	성 명	발령 사항
공무원교육원장	이 사 관	최상근	감사관에 보합
산업경제국장	"	윤백영	재무국장에 보합
구로구청장	부 이 사 관	이광하	보건사회국장에 보합
감사관	이 사 관	변의정	산업경제국장에 보합
교통국장	"	도재용	환경녹지국장에 보합
관악구청장	부 이 사 관	김인동	교통국장에 보합
환경녹지국장	이 사 관	강병수	공무원교육원장에 보합
성동구청장	부 이 사 관	김제량	종로구청장에 보합
재무국장	이 사 관	김완중	중구청장에 보합
강서구청장	부 이 사 관	이문재	용산구청장에 보합
보건사회국장	"	이원종	성동구청장에 보합
종로구청장	"	정영섭	등대문구청장에 보합
기획관리실	지방부이사관	이충우	부이사관에 임함
중 구 청 장	부 이 사 관	안기호	성북구청장에 보합
강 남 구 청 장	"	김진욱	서대문구청장에 보합
동 대 문 구 청 장	"	신현석	강서구청장에 보합
동 작 구 청 장	"	이원택	구로구청장에 보합
지하철운영사업소장	지방부이사관	이재환	경등포구청장에 보합
			부이사관에 임함
			동작구청장에 보합

현 부 서	직 급	성 명	발 령 사 항
강 동 구 청 장	부 이 사 관	김 두 한	관악구청장에 포함
성 북 구 청 장	"	김 진 호	강남구청장에 포함
용 산 구 청 장	"	강 덕 기	강동구청장에 포함
영 등 포 구 청 장	"	신 재 영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대통령)
서 대 문 구 청 장	"	심 재 섭	지하철운영사업소장에 포함 (시장)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대통령)
			기획관리실 (올림픽기획단장) 근무를 명함 (시장)

◎ 1982년 9월 15일자

령제 477 호

성 명	발 령 부 서	호 봉	직 급
김 대 근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8호봉	지방별정직 6 급상당 (전산처리사)
김 수 호	"	6호봉	" 8 급상당 (")
이 전 근	"	3호봉	" " (")
박 병 질	경 찰 국 교 통 과	4호봉	" " (")
권 이 태	"	1호봉	" " (")
김 미 영	부 녀 청 소 년 과	1호봉	" " (가정상담원)
조 순 환	근 로 청 소 년 회 관	20호봉	" 7 급상당 (지도교사)

◎ 1982년 9월 11일자 령제 478 호

◎ 1982년 9월 15일자 령제 479 호

보건사회국부녀청소년과
지방행정수사보 이 회 선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김 대 근
지방별정직 7 급상당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82년 9월 13일자

령제 480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심 우 정	은 평 구	용산구수도관리과장	지방별정사무관
반 장 식	용 산 구	내 무 국 (신급)	"